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93
----------	-------

발의연월일 : 2026. 7. 10.

발 의 자 : 김도읍 · 김형동 · 김은혜
박충권 · 이현승 · 이진숙
이종욱 · 구자근 · 이성권
강대식 · 권영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까지 이용료가 상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의 임산부,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8 신설 및 제21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8부터 제15조의22까지를 각각 제15조의19부터 제15조의23까지로 하고, 제15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8(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임산부와 그 자녀인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둘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임산부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인 임산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의 임산부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인 임산부
-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기준, 신청 방법·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한다”를 “보조하고, 제10호의 경비(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0호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18(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임산부와 그 자녀인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u> <u>2. 둘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임산부</u> <u>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인 임산부</u> <u>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의 임산부</u> <u>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u>

	<u>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u>
	<u>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인 임산부</u>
	<u>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기준,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5조의18 ~ 제15조의22 (생략)</u>	<u>제15조의19 ~ 제15조의23 (현행 제15조의18부터 제15조의22까지와 같음)</u>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설></u>	<u>10.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비</u>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u>보조한다.</u>	② ----- ----- ----- ----- - <u>보조하고, 제10호의 경비(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u>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u><신 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0호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